

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2012년 1월 1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석유 산업과 조영신과장(2110-4890), 김성용사무관(2110-4893)		

2012년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

- 악의적 가짜석유 판매시 1회 적발로 등록취소 2년간 영업장 폐쇄
- 용제유통 관리강화로 가짜석유 원료차단에 주력
- 불법시설물 자진철거기간(2~3월) 후 모든 주유소 특별단속 실시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

- 19일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“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” 회의를 개최
 - 경찰청, 국세청, 소방방재청, 한국석유관리원, 대한석유�협회, 한국주유소협회, 석유유통협회, 석유일반판매소협회, SK에너지, GS칼텍스, 현대오일뱅크, S-OIL 등
- 지난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, 기관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함

□ 정부가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(이하 석대법)」 개정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(2012.5.15 시행)함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함.

○ 먼저 악의적·고의적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‘원 스트라이크 아웃제’와 등록취소된 석유 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,

○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는 과징금 처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며,

-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를 시행.

○ 이에 따라,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의 행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.

□ 아울러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·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.

○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kl(약 50드럼)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하고,

○ 수급보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용도 사용여부 확인,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을 통해 용제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며,

- 용제 수급 허위보고 및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.

□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여,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,

-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,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임.
-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, 경찰청, 지방자치단체,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'범정부 합동단속반'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,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.
-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.
- 다만, 특별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석유사업자(주유소)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(2~3월)을 정하여(석유관리원에 신고) 시설 정상화 기회를 주어 억울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, 가짜석유 판매유혹을 미연에 방지 할 계획임.
- 또한,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매입·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를 추진 할 예정임
- 아울러,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자 처벌(5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)이 시행됨에 따라,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 사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함.
- 정부는 이번 석대법 개정에 맞춰 가짜석유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(5.15일 이전)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,
-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